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122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8.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12. 7. 접수 제56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C은 위 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6611), 2016. 11. 16. ‘C은 원고에게 59,28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양수금 35,775,96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071902), 2018.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 24. 확정되었다.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부친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8. 2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인 G, C, H,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는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2/11)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2/11 지분만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교사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겼다. 망인이 사망하자 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그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C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현금 5,5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아 사용하였는바,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11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1996. 10. 2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온 점, C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0. 7. 21.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J으로부터 31,960,000원을 대출받아 K에게 송금한 16,589,800원과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17,708,571원을 C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01. 2. 21. 주식회사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4. 3. 25. 주식회사 L으로부터 63,277,080원을 대출받아 망인 및 위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을 모두 변제한 점, 망인은 M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L에 대한 대출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2021. 8.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290,000,000원이고, M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92,289,0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C에게 지급한 금원

54,298,371원(=16,589,800원+17,708,571원+20,000,000원)은 그 액수, 지급 시점, C의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C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90,000,000에 C의 특별수익 54,289,371원을 합산한 후 C의 법정상속분 2/11을 곱하여 산출된

62,598,067원(=344,289,371×2/11)이 된다. 즉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보다 8,299,696원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1960. 5.

20.부터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

## 별지목록

##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25층  
아파트

1층 404.576㎡

2층 402.616㎡

3층 402.616㎡

4층 402.616㎡

5층 396.792㎡

6층 396.792㎡

7층 396.792㎡

8층 396.792㎡

9층 396.792㎡

10층 396.792㎡

11층 396.792㎡

12층 396.792㎡

13층 396.792㎡

14층 396.792㎡

15층 396.792㎡

16층 396.792㎡

17층 396.792㎡

18층 396.792㎡

19층 396.792㎡

20층 396.792㎡

21층 396.792㎡

22층 396.792㎡

23층 396.792㎡

24층 396.792㎡  
25층 396.792㎡  
지층 대피시설 401.8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철근콘크리트조  
84.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중구

대 25690.9㎡

2.

대 773.1㎡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26,464분의 35.54

